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
50~50p 24~30줄	개념, 공식-설명	정기검사 유효기간(규칙 [별표 7]) ① 6개월 : 타워크레인 ② 1년 : 굴착기(타이어식), 덤프트럭, 기중기(타이어식, 트럭적재식)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, 아스팔트살포기, 도로보수트럭(타이어식), 트럭지게차(타이어식) ③ 2년 : 로더(타이어식), 지게차(1ton 이상), 모터그레이더, 천공기(트럭적재식),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,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,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, 터널용 고소작업차(타이어식) ④ 3년 : 그 밖의 건설기계와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	정기검사 유효기간(규칙 [별표 7]) <table><tr><th>검사유효기간</th><th>연 식</th><th>기 중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6개월</td><td>20년 초과</td><td> - 덤프트럭 - 콘크리트 믹서트럭 -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 - 타워크레인 </td></tr><tr><td>-</td><td>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1년</td><td>20년 초과</td><td> - 로더(타이어식) - 지게차(1톤 이상) - 모터그레이더 -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 - 덤프트럭 - 콘크리트 믹서트럭 -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 </td></tr><tr><td>20년 이하</td><td> -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 -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 -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- 도수보수트럭(타이어식) - 트럭지게차(타이어식) </td></tr><tr><td>-</td><td> - 굴착기(타이어식) - 기중기 - 아스팔트살포기 - 천공기 - 항타 및 항발기 - 터널용 고소작업차 </td></tr><tr><td>2년</td><td>20년 이하</td><td> - 로더(타이어식) - 지게차(1톤 이상) - 모터그레이더 -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 -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 -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 </td></tr><tr><td>3년</td><td>20년 이하</td><td> -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- 그 밖의 건설기계 </td></tr></table> ※ 비 고 ·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. · 연식은 신규등록일(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)부터 기산한다. ·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 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	검사유효기간	연 식	기 중	6개월	20년 초과	- 덤프트럭 - 콘크리트 믹서트럭 -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 - 타워크레인	-		1년	20년 초과	- 로더(타이어식) - 지게차(1톤 이상) - 모터그레이더 -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 - 덤프트럭 - 콘크리트 믹서트럭 -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	20년 이하	-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 -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 -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- 도수보수트럭(타이어식) - 트럭지게차(타이어식)	-	- 굴착기(타이어식) - 기중기 - 아스팔트살포기 - 천공기 - 항타 및 항발기 - 터널용 고소작업차	2년	20년 이하	- 로더(타이어식) - 지게차(1톤 이상) - 모터그레이더 -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 -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 -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	3년	20년 이하	-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- 그 밖의 건설기계
검사유효기간	연 식	기 중																						
6개월	20년 초과	- 덤프트럭 - 콘크리트 믹서트럭 -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 - 타워크레인																						
	-																							
1년	20년 초과	- 로더(타이어식) - 지게차(1톤 이상) - 모터그레이더 -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 - 덤프트럭 - 콘크리트 믹서트럭 - 콘크리트 펌프(트럭적재식)																						
	20년 이하	-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 -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 -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- 도수보수트럭(타이어식) - 트럭지게차(타이어식)																						
	-	- 굴착기(타이어식) - 기중기 - 아스팔트살포기 - 천공기 - 항타 및 항발기 - 터널용 고소작업차																						
2년	20년 이하	- 로더(타이어식) - 지게차(1톤 이상) - 모터그레이더 - 노면파쇄기(타이어식) - 노면측정장비(타이어식) - 수목이식기(타이어식)																						
3년	20년 이하	-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- 그 밖의 건설기계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																		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